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588
----------	-----

2023. 04. 2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3. 3. 28. 박성연 의원 외 22명 공동발의 (2023. 4. 3. 회부)

2.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규정에 비추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개요

- 이 개정안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을 조정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3년 3월 28일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함(붙임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의 법적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2조제4항, 조례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시·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붙임1. 관련법령).

<수수료 면제 대상자>

근거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9조 (현행조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개정조례안)	(신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 참고로 타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면제대상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포함 4개 지자체에서 수수료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전라북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과 동일하게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조례에 추가하였음¹⁾.

1) 타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면제대상 현황

시·도조례	수수료 면제대상
서울특별시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경기도	1.~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11. 그 밖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시행규칙으로 정한 대상 없음)
전라북도	1.~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제주특별자치도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주 4.3사건 희생자

-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수준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정성

-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에서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로 규정하고 있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구분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p>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p> <p>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p>

	<p>(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p> <p>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p> <p>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p>
구분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종합하면, 현행 보훈보상자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보훈급여금, 교육지원(수업료등의 면제, 학습보조비의 지급), 취업지원(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의료지원(진료비 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²⁾,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가 가

2) 보훈보상자법 제2장 보훈급여금(제10조~제23조), 제3장 교육지원(제24조~제31조), 제4장 취업지원(제32조~제49조),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제50조~제54조)

능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면제 대상 추가로 인해 수수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3년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수수료 세입 및 면제 현황을 살펴 보면, 세입건수는 연평균 33건, 세입액은 60만원 수준이고, 면제건수는 약 50건 정도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 수입이 서울시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³⁾.

<최근 3년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세입 및 면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세입	면제	세입	면제	세입	면제	세입	면제
건수	98	151	57	57	29	40	12	54
금액	1,810	1,590	980	620	540	410	290	560

※ 수수료 면제대상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임

- 다만, 대상자 표현을 상위법령과 통일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의 본문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⁴⁾.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2. (생략)	제19조(수수료)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수료)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제2호)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감면 내역이 없거나 미미하여 보훈보상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에 따른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기술적으로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4) 보훈보상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7.>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설></p> <p>② (생략)</p>	<p>3.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u>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u></p> <p>② (현행과 같음)</p>	<p>3. ----- ----- ----- <u>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u></p> <p>② (현행과 같음)</p>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법조사관 최지현	02-2180-8216

[붙임1] 관련법령(p.8)

[붙임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요(p.1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1조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조정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는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

정신청이 있는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는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4. 6.>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2조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⑤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19조(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1조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시행일: 2023. 6. 5.] 제2조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

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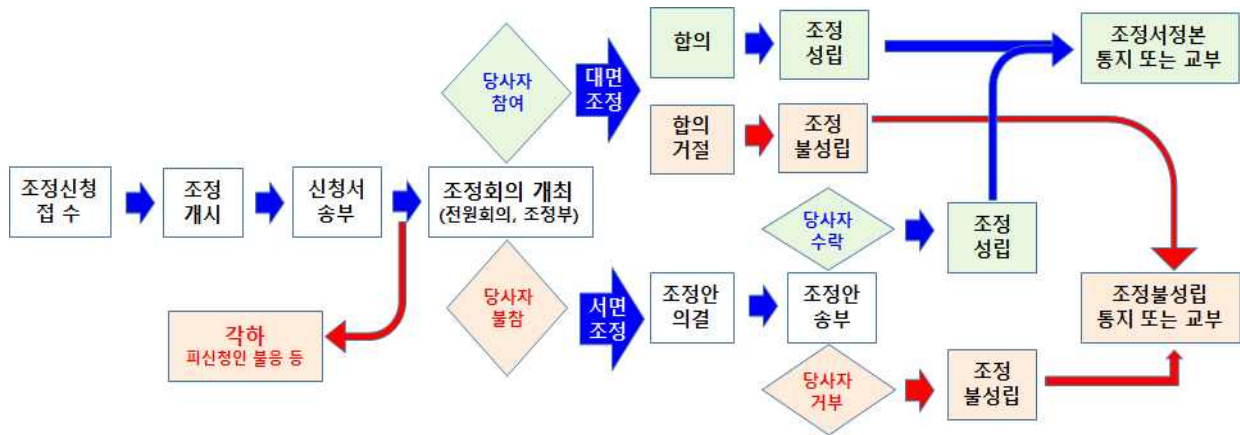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추진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위원회 개요

- 위원구성 : 11명(위원장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가능)
- 임 기 : 최초 3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심의·조정
- 운 영 : 조정위원회(전체 위원 대상) / 조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심 의 : 임대차보증금(5억원) 및 조정목적값(2억원)을 기준으로 초과인 경우 조정위원회, 이하의 경우 조정부를 구성하여 분쟁 심의
 - 조 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조정절차



■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신 청	조정 결과(위원회 개최)			각하			분쟁 조정 (A+B)
		계(A)	성립	불성립	계	유선(구두)조정(B)	각하	
계	249	87	55	32	162	78	84	165
2022년	114	40	27	13	74	30	44	70
2021년	69	31	19	12	38	22	16	53
2020년	66	16	9	7	50	26	24	42

(*성립=양자합의)